KOTRA 경제통상 리포트

일련번호 : EU24-31
발 간 일 : 2024.12.10
보 고 자 : 브뤼셀무역관 김도연

EU의 ESG 주요 규제와 향후 정책 방향

◈ EU는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 전반에 환경·인권 중심의 ESG 규범 도입

◈ EU의 주요 ESG 정책으로는 △공시(CSRD, 택소노미, SFDR), △실사(CSDDD, 배터리 규정, 산림전용방지법, 강제노동결부제품금지 규정), △환경(CBAM, 에코디자인 규정, 그린워싱 방지) 등

◈ 12월 1일 출범한 EU 집행위원회,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ESG 규제의 간소화 추진 전망

□ EU의 ESG 정책

○ EU는 △개방형 전략적 자율성(Open strategic autonomy), △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핵심 목표 안에서 유럽 공급망 강화와 ESG 관련 정책을 추진

- 특히, ESG 분야 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규범를 도입 중

· '18년 지속가능 금융 행동계획을 수립해 ESG 리스크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'19년 그린딜('50년 탄소중립 달성)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ESG 법률 제정을 추진

□ EU의 주요 ESG 규범

○ **(전반)** ESG 요건 중에서도 환경, 인권 및 노동권 관련 정책이 주를 이루며 크게는 △공시, △실사, △환경 분야로 분류될 수 있음.

< EU의 주요 ESG 정책 >

공시	실사	환경
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(CSRD)	공급망 실사 지침(CSDDD)	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
택소노미(Taxonomy)	배터리 규정, 산림전용방지법	에코디자인 규정(ESPR)
지속가능금융제도(SFDR)	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	그린워싱 방지법

① 공시 분야

○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(CSRD*, EU 2022/2464) 발효

*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

- **(개요)**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지침(NFRD*)을 대체하며, 지속가능성 정보를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화 * Non-Financial Reporting Directive
- **(입법 경과)** 발효('23.1.5) → 회원국 자국법 전환('24.7.6) → 공시 의무('25.1.1~)
- **(적용 대상)** 대기업, 상장기업, EU 내 순 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역외기업 등
- **(의무)**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(ESRS)*에 따른 내용 및 ESG 항목 공시

*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, CSRD 적용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공시 기준으로 ESG 주제별 10개 기준 및 일반 기준 2개로 구성

- **(제재)** 벌금 등 구체적인 제재는 회원국별 설정
- **(최근 동향❶)** EU는 기업의 지침 대응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, 90여 개의 실무적인 질문과 답변을 담은 Q&A북을 EU 관보에 게재('24.11.13)

· CSRD 적용 범위 및 일정, ESRS 면제, 중소기업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, 감사 및 보증 이슈 등을 포함(Q&A 링크).

- **(최근 동향❷)** CSRD 자국법 전환 관련, 현재 12개국에서* 입법을 완료하지 않았으며(12.6 확인 기준), 집행위는 해당 입법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 발송('24.9월)

* 입법 미완료 국가 : 벨기에, 독일, 에스토니아, 그리스, 스페인, 사이프러스, 룩셈부르크, 몰타,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, 폴란드, 포르투갈

○ 택소노미 규정(Taxonomy regulation, EU 2020/852) 발효

- **(입법 경과)** 발효('20.7월) 적용('22.1.1일부)
- **(내용)** 6대 환경목표와 4대 친환경 조건을 충족할 경우,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아 투자 및 지원 수혜에 유리

<참고 : 택소노미 규정 인정 조건>

6대 환경목표	4대 친환경 판단 조건
1) 기후 변화 완화 2) 기후 변화 적응 3) 수자원·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4) 순환경제로의 전환 5) 오염 방지 및 관리 6)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	1)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 달성에 기여 2)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(DNSH, Do Not Significant Harm) 3) 최소한의 사회·경영 안전조치 준수 4) 기술 선별 기준(Technical Screening Criteria)*에 부합 * 탄소 배출량 및 각 기준의 구체적인 달성 기준 제시

- **(최신 동향)** 집행위원회, 택소노미 규정 이행 관련 Q&A북 발표('24.11.29)
  - · 특정 활동 관련 분류체계 요건 및 심사 적용 기준, DNHS(Do No Significant Harm) 기준, 기후·환경 위임법* 관련 활동에 대한 보고의무 명확화 등 세부 지침을 제시
  - * Taxonomy Climate Delegated Act(기후), Taxonomy Environmental Delegated Act(환경)
  - · 택소노미 Q&A 바로가기(링크)

○ **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(SFDR*, EU 2019/2088)** 발효

*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

- **(입법 경과)** 발효('19.12월) → 시행('21.3월) → 세부 규정(규제기술표준(RTS)) 추가 적용('23.1.1일부)
- **(내용)** 투자 또는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(ESG 투자 규모, 환경·사회에의 부정적 영향 등) 공시

② 실사 분야

○ **공급망 실사 지침(CSDDD*, EU 2024/1760)** 발효

*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

- **(입법 경과)** 발효('24.7월) → 회원국 자국법 전환(~'26.7월) → 단계적 시행('27.7.26일부)
- **(적용 대상)** 연 매출 4.5억 유로 초과하는 EU 역내·외 대기업 및 로열티 수익기업, 최종 모기업

- **(내용)** 자사 비즈니스 활동 내 인권·환경 실사 체계 구축, 기후 전환 계획 채택, 연 1회 공시 등

- **(제재)** 과징금 글로벌 연 매출의 5% 부과 가능, 세부 내용은 회원국별 설정

○ **배터리 규정(Battery regulation, EU 2023/1542)** 발효

- **(입법 경과)** 발효('23.8월) → 단계적 시행('24.2.18) → 실사 의무 시행('25.8.18일부)

- **(적용 대상)** EU 시장에 배터리를 출시하는 기업(제조사, 수입사, 유통업체 등) 중, 연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기업

- **(내용)**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실사(인권 및 환경)를 이행하고, 실사 관련 연례보고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개

· 집행위원회, '25.2.18일까지 배터리 실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

○ **산림전용방지법(EUDR*, EU 2023/1115)** 발효

* Regulation on Deforestation Free Products

- **(개요)** 산림의 전용 및 황폐화와 관련된 제품의 역내 수입·유통 금지

- **(입법 경과)** 발효('23.6월) → 대기업부터 단계적 시행('25.12.30일부)

- **(적용 대상)** 산림전용 품목(소, 카카오, 팜유, 커피, 고무, 대두, 목재) 및 파생품의 역내 사업자, 유통업자

- **(내용)** ▲(원산지 정보 포함된) 실사 선언서 제출, ▲ 실사 이행, ▲관련 정보 제공 및 보관

- **(제재)** 연 매출의 4% 벌금이 부과되며, 공공입찰 및 보조금 수혜 배제 등 다른 제재도 부과될 수 있음

- **(최근 동향)** 12월 4일부로 실사 선언서 제출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 공식 운영되었으며,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교육도 12월 16일부터~'25년 1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(링크)

○ **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*** 입법 마무리

* Regulation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

- **(개요)**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과 연관될 시, EU 수입 및 유통 금지
- **(입법 경과)** 3자 합의('22년) → 유럽의회 승인('24.4월) → EU 이사회 승인(11.19) → 관보 게재(예정, 게재 이튿날 발효) → 시행(발효 3년 후)
- **(적용 대상)** 기업규모 불문하고 강제노동이 결부된 완제품 및 부품에 적용
- **(내용)** 집행위 또는 회원국 당국 조사를 통해 제품이 강제노동과 연관 시, 폐기 또는 금지 조치 명령
- **(제재)** 벌금 부과 가능, 세부 제재 수준은 회원국별 설정

③ 환경 분야

○ **탄소국경조정제도(CBAM*, EU 2023/956)** 발효

*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Regulation

- **(입법 경과)** 발효('23.5월) → CBAM 시행령 채택('23.8월) → 전환기 개시('23.10월) → 본격 시행('26.1.1일부)
- **(적용 대상)** 철강, 알루미늄, 시멘트, 비료, 전력, 수소 등 6대 품목의 수입업자
- **(내용)** (전환기) 분기별 탄소 배출 데이터 제출, (본격 시행기) 매년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
- **(제재)** (전환기) 내재 배출량 톤당 10~50유로, (본격 시행기)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 벌금 부과
- **(최신 동향)** 24.9월, 2개의 시행령 초안이 발표되며 공공 의견 수렴 진행
  - △수입신고자 승인, △등록부(Registry) 관련된 것으로, 11.28일부 의견수렴 마감(수입신고자 신고 관련 65개 의견 제시, 등록부 관련 49개 의견 등록)
  - '25년에는 본격 시행기('26년)를 앞두고 기업의 규정 대응 준비를 위한 시행령들이 다수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, 관련 동향 예의 주시 필요

○ **에코디자인 규정(ESPR*, EU 2024/1781)** 발효

*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

- **(개요)**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친환경성을 보장하는 규범으로, 기존 지침 형태에서 규정으로 강화
- **(입법 경과)** 발효('24.7월) → 제품별 순차적 시행(관련 세부 법령 추후 발표 예정)
- **(적용 대상)** EU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
- **(내용)** 제품의 지속 가능 요건 부여(내구성, 재활용성, 수리가능성 등), 디지털 제품 여권(DPP, Digital Product Passport)을 도입해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 등

<참고 : 디지털 제품 여권(DPP)>

· (의무 사항) 기업은 재활용 원재료 비율, 환경발자국(environmental footprint), 제품의 예상 폐기물 발생량 등의 요건을 준수하고, 관련 정보를 디지털 제품 여권을 통해 공개

· (포함 정보) 제품 성능* 관련 정보, 제품의 설치·사용·유지·수리 방법, 우려 물질 정보, 안전 지침 등
* 수리 가능성 및 제품 내구성 점수, 탄소발자국, 환경발자국 등

· (시행 시기) 집행위가 제품군별 위임법을 통해 발표할 예정으로, 첫 번째 DDP 도입은 '27년 중순 전망

- **(제재)** 벌금을 비롯한 행정 제재가 가능하며, 세부 제재 수준은 회원국별 설정
- **(최신 동향)** 우선 적용 품목군에 철강, 섬유, 화학물질 등이 예상되며, '25.4.19일 이전 작업 계획을 통해 품목 및 주요 추진 일정이 발표될 전망

○ **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*(그린워싱 방지, EU 2024/825)** 발효

*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

- **(개요)** 기업의 그린워싱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친환경 전환을 위해 기존 2개 지침*을 개정
  * △소비자 권리 지침(2011/83/EU), △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(2005/29/EC)
- **(입법 경과)** 발효('24.3월) → 회원국 자국법 전환(~'26.3.27) → 시행('26.9.27일부)
- **(적용 대상)** EU 내 모든 제품 대상
- **(내용)** 그린워싱금지, 의도된 제품 조기 노후화 행위 금지, 라벨링요건 강화, 친환경 표시 지침(입법 진행 중) 등

□ EU ESG 정책 방향 :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 추진

○ 환경 및 인권·노동권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EU ESG 정책은 '24.12.1일 출범한 폰데어라이엔 2기*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지속될 전망

*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(Ursula von der Leyen) EU 집행위원장은 '19~'24년에 이어 '24~'29년 집행위원장직을 역임

<'24~'29년 EU 집행위원회 개요>

· EU의 행정부로 불리며 입법을 제안하는 EU 집행위원회는 임기 5년의 집행위원장 1명과 26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됨.

- 구체적으로는 집행위원장 1명,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포함한 6명의 부위원장(Vice-Presidents), 분야별 담당 집행위원 총 20명으로 구성

<EU 입법기관 개요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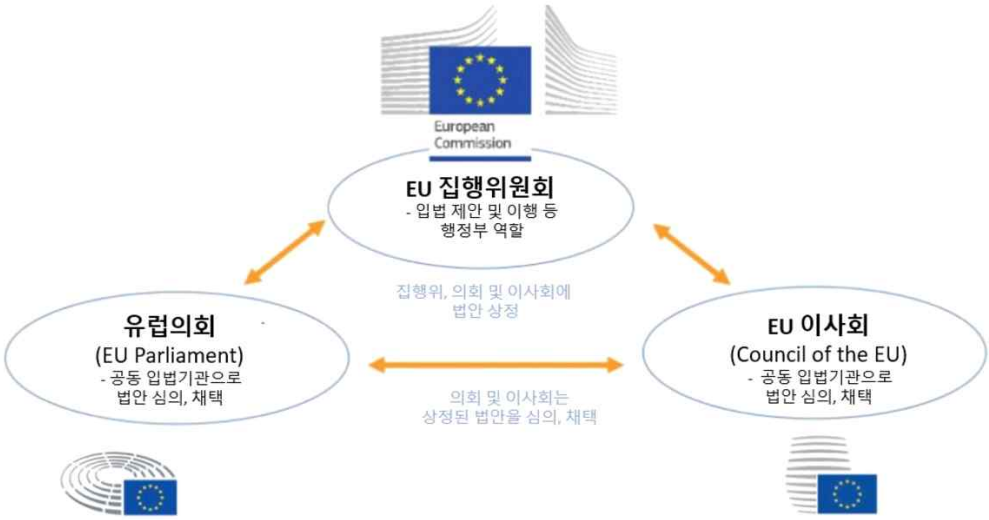

자료 : EU 집행위원회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재가공

○ 다만, 이번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 정부('19~'24년) 대비 ESG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

-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집행위원의 절반가량이(13명) 기업 친화적 우파 정당인 '유럽국민당(EPP)' 소속임을 고려할 때,

· 1기 정부에서 추진했던 디지털 및 그린딜 전환과 전략적 자율성(역외 의존도 감축) 기조는 유지하되, 보다 친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음.

○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, **'25.2.26일까지 EU의 주요 ESG 공시 법령을 통합한 'ESG 옴니버스**(omnibus) **법안'을 수립**하겠다고 발표('24.11월)

- 옴니버스 법안에 포함되는 법령은 **△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(CSRD), △공급망실사지침(CSDDD), △택소노미(Taxonomy) 등 3대 공시 규범이** 해당

○ 다만, ESG 옴니버스 법안은 기존 법령의 내용을 변경하기보다는, 법령 간 중복되는 요건들을 통합 및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

- 공시 법령 내 유사 항목들이 많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, 규제 이행 준비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

○ EU의 옴니버스 법안은 이번 3대 공시 법령 외에도 다른 법령으로도 유사하게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, 관련 EU 동향에 대한 주시 필요

- 새로운 EU 집행위는 기업의 보고 요건 전반을 25% 감축할 계획이며, ESG 분야를 선두로 기타 법령에도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

자료 : EU 집행위, 유럽의회, Politico, Euractiv 등 현지 언론 및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/끝/